

제 정 : 2021.01.04.
일부 정 : 2022.03.24.

정 관

2022.03.24.



정 관

제 1 장 총 칙

제1조(상)

사는 디엘이 씨 주식 사이 말 다. 영문으로는 DL E&C CO.,LTD. 기 다. 라

제2조(목적)

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 을 목적으로 다.

1. 제재 및 원목생산
2. 목, 축, 산업 설비, 전기, 난방, 위생, 기 및 도로 장기 제 설 사
3. 철 재 설 사업
4. 정보 신 사업
5. 소방시설 사업
6. 문 재 보수 사업
7. 중기, 자동차정비 및 임대업
8. 조 사업
9. 기물처 시설, 분뇨처 시설, 오수처 시설, 정 조 및 축산 수처 시설의 설, 시, 운영에 일체의 사업
10. 스시설 시 업
11. 재료의 매업
12. 제 의 제조 매업
13. 륝운수업
14. 광산 발업
15. 외 보 대 업
16. 보세 업
17. 세 물 급업
18. 사설보세 창 업
19. 조선업
20. 부동산 발, 중 및 설 업, 주 등제 물의 설, 매매 및 임대업
21. , 상 , 발아 등제 물 및시장의 종 업

22. 외자원 발사업
23. 오염 방지 시설업, 오염방지시설의 설 , 시 및 운영에 일체의 사업
24. 석산 발, 재생산 및 매업
25. 레미 , 스 제조 매업
26. 설 납업 및 물 납업
27. 랜 설 , 제작, 시 및 업
28. 정연료 사용기기 시 업
29. 양열 에너지 사용시설 기기의 설 , 제작, 매, 시 업
30. 만준설 사업
31. 우수면 매 업
32. 삭도 설 사업
33. 목, 축, 산업 설비, 전기, 난방, 위생, 기 및 도로 장기 제 설 사, 전력시설물의 설 업 및 업
34. 전기, 증기 및 기 유 시설의 설 및 급에 사업
35. 산업설비용역업, 전문기술용역업 및 종 설 기술 용역업
36. 소 어 및 정보처웨 련 기기 발, 매 및 대여업, 정보처 용역사업
37. 주차장 운영 및 유료도로 운영업
38. 발전시설 운영 및 에너지 급사업
39. 종 양업, 광숙박업, 레저 및 스 시설 설 및 운영업
40. 사 접자본 시설 자 및 운영업
41. 에스 (정보, 신이아스) 사업
42. 도소매업 (도서, 문구, 잡 , 기념 , 주방 구 및 전제 등)
43. 서비스업(량, 조 물설 , 전시기 및 매)
44. 음박업(음식점)
45. 대지조성업
46. 시설물의 전진단 및 유환 업
47. 랜 , 발전소 및 일반산업 장 그 시설의 설을 위 사업의 , 설 , 엔지니어 , 량, 구매 및 대 , 조달독촉, 사, 사 , 시운전 및 장 발전소의 조업보수 등에 일체의 기술용역사업
48. 일반 목 및 수자원 전반에 시설의 설을 위 사업의 , 설 , 엔지니어 , 량, 구매 및 대 , 조달독촉, 사, 사 , 시운전 및 시설의 조업 보수 등에 일체의 기술용역사업

49. 장 및 발전소의 제 정, 시설 및 장 와 일반 목, 수자원 전반에 제 정, 시설 및 장비에 기술적, 제적 당성 분석 에 조사연구 및 발사업
50. 장 및 발전소의 시설 및 장 와 일반 목, 수자원 전반에 시설 및 장비에 요 권, 제조 정 실시 권 등의 매매 및 그 알선
51. 전 의 사업수 을 위 여 요 상 , 기자재의 수출입업 및 기 무역 련사업
52. 전 의 요 기술자의 수 련
53. 기기의 설 , 제작 및 매사업
54. 물 매도 인서 발 업
55. 정 설비 제조업
56. 모델 업, 인 어업
57. 영 대 업
58. 소음진동 정대 업
59. 신 재생에너지사업
60. 지 수 정 업
61. 양 정 업
62. 설사업 업
63. 철 재 제작 설 업
64. 전자상 래 및 기 신 매업
65. 등록체 시설업의 설 육및 운영업
66. 사 보유 있는 지식, 정보, 기술 등 무 자산 지적재산권의 선스, 매 꺾이 련 용역사업
67. 산 소 집이 용, 저장 및 소자원 사업의 설 , 시 및 운영에 일체의 사업
68. 온실 스배출권 래업
69. 압 스 저장 및 운반업, 위 물 저장 및 운반업
70. 신기술 련 자,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
71. 전 에 부대되는 사업

제 3 조(사업 발 산업 뜻 사업

사는 요에 사 의 따라로 내외에 지점, 출장소 는 영업소 들 수 있다.

제 4 조(방법)

사의 험 사의 인 넷 지(<http://www.dilenc.co.kr>)에 재 다. 다만, 전산장애 는 그 밖의 부득 사유로 사의 인 넷 지에 이 수 없을 때에는 서울 별시에서 발 되는 제신문에 다.

제 2 장 주 식

제 5 조(발 예정주식의 총수)

사 발 이 주식의 총수는 120,000,000 주로 다.

제 6 조(일주의 금)

사 발 이는 주식 일주의 금 은 5,000 원으로 다.

제 7 조(설 시에 발 는 주식의 총수)

사 설 시에 발 는 주식의 총수는 21,472,623 주로 다.

제 8 조(주식의 종류)

사 발 이 주식은 기명식 보 주식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다.

사 발 이는 종류주식은 익배당에 이종류주식 의 권 배제 는 또 제 에 주식, 상 주식, 전 주식 및 들의 전부 험 일부 또 주식으로 다.

사 발 이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30,000,000 주 내로 다. 이

제 9 조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

사는 익배당에 여 우선적 내용 있는 제 1 종의 권 배당 종류주식("제 1 종 종류주식" 다)을 발이라 수 있으며 그 발 주식의 수는 30,000,000 주 내로 다. 이

제1종 종류주식의 배당은 비참 적, 비누적적으로 다.
제1종 종류주식에 대 여는 보 주식의 배당보다 면금 을 기준으로 여 연 1% 금전으로 더 배당 다. 다만, 주식배당 있는 우에현 적용 지 이 니 다. 아

제1종 종류주식에 대 여 소정의 배당을 지 니 다는 의아 있는 우에는 그 의 있는 총 의 다음 총 부 그 우선적 배당을 다는 의 있는 총 의 종료시까지는 의 권 있는 으로이다.

사 유상종자 는 무상증자 또실시 는 우, 제1종 종류주식에 대 신주의 배당은 유상증자의 우에는 보 주식으로 , 무상증자의 우에는 제2종 종류주식으로 다.

제1종 종류주식의 우선기 은 무기 으로 다.

제10조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

사는 익배당에 여 우선적 내용 있는 제2종우의 권 배당 종류주식("제2종 종류주식" 다)을 발이라 수 있으며 그 발 주식의 수는 30,000,000 주 내로 다. 이

제2종 종류주식에 대 여는 면금 을 기준으로 여 연 1% 상 12% 이 내에서 발 사에 사 정 우선비 에 금 을 우선배당 다.

보 주식의 배당률 제2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 우에는 그 초 분에 대 여 보 주식 동일 비 로 참 시 배당 다.

제2종 종류주식에 대 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지 못 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 여 배당 다.

제2종 종류주식에 대 여 소정의 배당을 지 니 다는 의아 있는 우에는 그 의 있는 총 의 다음 총 부 그 우선적 배당을 다는 의 있는 총 의 종료시까지의 권 있는 으로이다.

사 유상종자 는 무상증자 또실시 는 우, 제2종 종류주식에 대 신주의 배당은 유상증자의 우에는 보 주식으로 , 무상증자의 우에는 그와 은 종류의 주식으로 다.

제2종 종류주식의 존속기 은 발 일로부 10년으로 기 만료와이 동시에 보 주식으로 전 된다. 그러나 위 기 중 소정의 배당을 지 못 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 때까지 그 기 을 연장 다. 우 전 으며 인 여 발 는 주식에 대 익의 배당에 이 여는 제16조의 정을 준용 다.

제 11 조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

사는 사이의 의이 여 사 는 주주 상또에 선 권을 지는 종류주식(“상 주식이 다)을 발이라 수 있으며, 그 발 주식의 수는 30,000,000 주 내로 다. 이 상 주식은 다음 에 의 여 사의선 에 상 수 있으나 주주 사에 대 여 상 을 청구 수 있 나 는 두 지 상또방법을 로 상 주식의 발 시에 사 의로 정 수 있다.

1. 상 주식의 상 은 “발 + 산금 ”으로 며, 산금 은 연 10% 초 지 는 범위 내에 할 배당률, 시장상 및 기 상 주식의 발 련된 제반 상 을 려 여 발 시 사 의 의로 정 다. 다만, 상 을 조정 수 있는 으로 려는 우에는 사 에서 상 이 을 조정 수 있다는 뜻, 조정사유,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 여야 다.

2. 상 주식의 상 기 은 발 일 속 는 연도의 정기주주총 종료일 익일부 발 15년 되는 날 속 는 연도에 대 정기주주총 종료일 1 월 되는 날 내외 범위에서 사 정 다. 다만, 상 기 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목의 나에 당 는 사유 발생 면 그 사유 소될 때까지 상 기 은 연장된다.

. 상 주식에 대 우선적 배당 완료되지 메 우 아 나, 사의 익 부족 이상이기 내에 상 지 못 우

3. 사의선 에 상 는 때, 사는 상 주식을 일시에 는 분 여 또 상 수 있다. 다만, 분 상 는 우에는 사 추천 는 분비례의방법에 의 여 상 주식을 정 수 있으며, 분비례 시 발생 는 단주는 상 지 이 니 다. 아

4. 사의선 에 상 는 때, 사는 상 대상인 주식의 득일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 자에 지 는 또 여야 다.

5. 주주 사에 상 을 청구 는 우, 상 주식 전부 일시에 는 또 이 분 여 상 줄 을 청구 수 있다. 다만, 사는 상 청구 당시에 배당 능 익 부족 이우에는 분 상 수 있으며 분 상 는 우에는 사 추천 는 분비례의방법에 의 여 상 주식을 정 수 있 , 분비례시 발생 는 단주는 상 지 아니 다. 아

6. 주주 사에 상 을 청구 는 우, 그 주주는 2주일 상의 기 을 췌 여 상 뜻 상 대상주식을 사에 지 여야 다.

사는 상 꺾식의 득의대 로 금 외의 유 증권(다 종류)의 주식은 제외 다) 나 그 밖의 재산을 교부 수 있다.

제 12 조의 정에 의 전규주식을 사의선 에 의 여 상 수 있는 상 주식으로 발 우, 사 는 주주(전 권 사와 사의선 에 의 상 권 사 에 상 우선순위 정 수 있다.

제 12 조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

사는 사이의 의이 여 사 는 주주 전도권을 지는 종류주식(전 주식이 다)을 발이라 수 있으며, 그 발 주식의 수는 의 권 있는 발 주식총수의 5분의 1 내로 다. 이

전 주식은 다음 에 의 여 사의선 에 전 수(나 주주 사에 대 여 전 을 청구 수 있 나 는 두 지 전도방법을 로 전 주식의 발 시에 사 의로 췌 수 있다.

1. 전 으로 인 여 발 주식은 보 주식으로 다.
2. 전 비 은 원 적으로 전 주식 1주에 보 주식 1주인 으로 되, 요 우 제반 사정을 려 여 발 시에 사 의에 의 전 비 및 전 비 을 조정 등 전 에 여 요 사 을 달 정 수 있다.

3. 전 의 사유는 다음 목의 사유로 다.

. 사 전 을 선 는 우, 사 전 을 선 수 있는 사유는 발 시 사 에서 정 야.

나. 주주 전 을 청구 는 우

4. 사 전 의로 인 여 발 는 신주의 총 발 은 전 전의 주식의 총 발 으로 다.
5. 전 는 전 청구 또 수 있는 기 은 발 일로부 1월 상 30년의 범위 내에서 발 시에 사 의 의(정 다. 기 내에 전 권 이 사되지 이 니 면 기 만료일에 전 된 으로 본다.
6. 전 으로 인 여 발 는 주식에 대 의의 배당에 이 여는 제 16 조의 정을 준용 다.
7. 전 주식의 기 조 및 내용은 사 의로 췌 다.

제 13 조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시되어야 권 의 전자등록)

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 발 는 대신 전자등록기 의 전자등록 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시되어야 권 전자등록 다.

제 14 조(신주인수권)

사의 주주와 신주발 에 있어서 그 소유 주식수에 비례 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 진다.

사 는 제1 0회 정에 불구 규다음 의 우에는 주주외의 자(사의 이 주주 다)에 신주 배정 수 있다.

1. 주주우선 모의 방식으로 신주 발 는 우
2. 발 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 지 는 범위 내에있 일반 모의 방식으로 신주 발 는 우
3. 발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 지 는 범위 내에있 긴급 자금조달을 위 여 내외 금융기 는기 자자에 신주 발 는 우
4. 발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 지 는 범위 내에있 사업상 중요 기술도입, 재무구조 선, 연구 발, 생산 매 자본제 등 사의 영상 목적을 위 여 정 자에 신주 발 는 우
5. 발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 지 는 범위 내에있 주식예 증서(DR)발 에 신주 발따라는 우

제2 에 주주외의 따따 신주 배정 는 우 상법 제 416 조 제 1 , 제 2 , 제 2 의 2, 제 3 및 제 4 에서 정 는 사 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 지 나 여야 다. 다만, 자본시장 금융 자업에 법률 제 165 조의 9 에 주요사 보따러 그 납입기일의 1 주 전까지 금융위원 및 래소에 시 으로 그 지 및 써 음 수 있다.

제2 의 어느 나의 방식에 의 신주 발 우에는 발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 등은 사 의 의정 다.

주주 신주인수권을 기 는 상실 나신주배정에서 단주 발생 는 우에 그 처 방법은 사 의 의정 다.

제 15 조(주식매수선 권)

사는 임 직원(상법 시 령 제 30 조에서 정 는 사의 임 직원을 다. 조에서 이다)에 발 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

주식매수선 권을 주주총 의 별 의에 의 여 부여 수 있다. 다만 상법 시 령 제 30 조에서 정 는 도약범위내에서는 사 의 의 사의 사 제외 이

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 권을 부여 수 있다. 사 의 의뢰주식매수선 권을 부여 우 사는 부여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 의 승인을 받 야 다. 아 주주총 는 사 외에 의 부여 는 주식매수선 권은 영성 목 는 또 시장지수 등에 연동 는 성 연동 으로 부여 수 있다.

주식매수선 권을 부여받을 자는 사의 설 영 외영업 는 기술 신 또 등에 기여 나 기여 수 있는 자로 다.

주식매수선 권의 사로 교부 주식(주식매수선 권의 사 시 외의 차 을 금 는 자기주식으로 교부 는 우에는 그 차 의 산정기준 되는 이 주식을 말 다)은 제8 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 권을 부여 는 주주총 는 또 사 의로 정 다.

주식매수선 권의 부여대상 되는 임직원외 수는 재직 는 임직원의 100분의 30을 초 수 없 , 임원 는 직원 1인당 대 여 부여 는 주식매수선 권은 발 주식총수의 100분의 5 초 수 없다.

주식매수선 권을 사 주식의 1주당 사 은 다음 의 상 어야 이 이 다. 주식매수선 권을 부여 그 사 을 조정 는 우에도 다. 또

1. 새로 주식을 발 이어 교부 는 우에는 다음 목의 중 높은 금

. 주식매수선 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실질

나. 당 주식의 권면

2. 자기주식을 양도 는 우에는 주식매수선 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실질

주식매수선 권은 제1 의 의일로부 3년 날로써 7년내에 사 수 있다.

주식매수선 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 의 의일부 2년 상 재임 는이 또 재직 여야 사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 권을 부여 받은 자 제1 의 의일부 2년내에 사망 나 기 본인의 책사유 난무사유로 함 는 또 직 우에는 그 사기 동 주식매수선 권을 사 수 있다.

주식매수선 권의 사로 인 여 발 신주에 대 익의 배당에 이 여는 제16 조의 정을 준용 다.

다음 의 1에 당 는 우에는 사 의 의뢰주식매수선 권의 부여 소 수 있다.

1. 주식매수선 권을 부여받은 임 직원 본인의 의사에 임 내따리직 우

2. 주식매수선 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의 는 ~~이~~로 ~~써~~에 중대 손
끼 우
3. 사의 산 는 산 등으로 주식매수선 권의 사에 응 수 없는 우
4. 기 주식매수선 권 부여 약에서 정 소사유 발생 우

제 16 조(신주의 배당기산일)

사 유상~~자~~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 여 신주 발 는 우 신주에
대 익의 배당에 이 여는 신주 발 때 속 는 영업년도~~의~~ 직전
영업년도말에 발 된 으로 본다.

제 17 조(명의 서대 인)

사는 주식의 명의 서대 인을 둔다.

명의 서대 인 및 그 사무 급장소와 대 업무의 범위는 사 의 의~~회~~
정 다.

사의 주주~~명부~~부 는 그 복본을 명의 서대 인의 사무 급장소에 비
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, 기 주식에 사무는 명의 서대 인으로
여금 급 다.

제 3 의 사무 급에 절차는 명의 서대 인 정 련 ~~업무~~ 정에 규
다. 따

제 18 조(기준일)

사는 매년어 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그
산기에 정기주주총 에서 권 사 주주로 다.

사는 임시주주총 의 소집 기 요 우 사 의 의~~회~~정 날에
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그 권 사 주주로 수 있다. 사는
2 주 전에 여야 다.

이

제 3 장 사 채

제 19 조(전 사채의 발)

사는 다음이 의 어느 내에 당 는 우 사 의로 주주의 자(사의 주주 다)에 전 사채 발 수 있다.

1. 사채의 면총 4,000억원을 초 지 는 범위 내에 일반 모 는 주주우선 모의 방법으로 전 사채 발 는 우
2. 사채의 면총 4,000억원을 초 지 는 범위 내에 긴급 자금조달을 위 여 내외 금융기 는기 자에 전 사채 발 는 우
3. 영상 요로 외 인 자 촉진법에 의 외 인 자 위 여 전 사채 발 는 우
4. 사채의 면총 4,000억원을 초 지 는 범위 내에 사업상 중요 기술도입, 재무구조의 선, 연구 발, 생산 매 자본제 등 사의 영상 목적을 위 여 정 자에 전 사채 발 는 우
5. 기 영상의 요에 의 사모의 방법으로 발 는 우

제1 의 전 사채에 있어서 사 는 그 일 여에 대 여만 전 권을 부여 는 조 으로도 발 수 있다.

전 으로 인 여 발 는 주식은 보 주식 는 종류주식으로 , 전 은 주식의 면금 는 그 상의도 으로 사채발 시 사 정 대

전 을 청구 수 있는 기 은 당 사채의 발 일 익일부 그 상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다. 그러나, 위기 내에서 사 의 의 전 청구기 췌 조정 수 있다.

전 으로 인 여 발 는 주식에 대 익의 배당 전 사채에 대 자의 이 지급에 여는 제 16 조의 정을 준용 다

제 20 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)

사는 다음이 의 어느 내에 당 는 우 사 의로 주주의 자(사의 주주 다)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 수 있다.

1. 사채의 면총 4,000억원을 초 지 는 범위 내에 일반 모 는 주주우선 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 는 우
2. 사채의 면총 4,000억원을 초 지 는 범위 내에 긴급 자금조달을 위 여 내외 금융기 는기 자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 는 우
3. 영상 요로 외 인 자 촉진법에 의 외 인 자 위 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 는 우

4. 사채의 면총 4,000억원을 초과하지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
기술도입, 재무구조의 선, 연구 발, 생산 매 자본제 등 사의 영상
목적에 위 여 정 자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 는 우
5. 기 영상의 요에 의 사모의 방법으로 발 는 우
신주인수 청구 수 있는 금 은 사채의 면 을 초 지 는 범위내에서
사 정 때

신주인수권의 사로 발 는 주식은 보 주식 는 종류주식으로 , 그
발 은 면금 는 그 상의도 으로서 사채발 시 사 정 때
신주인수권을 사 수 있는 기 은 당 사채 발 일 익일부 그 상 기일의
직전일까지로 다. 그러나 위 기 내에서 사 의 의 신주인수권에서
사기 을 조정 수 있다.

신주인수권의 사로 인 여 발 는 주식에 대 익의 배당에 이 여는
제 16 조의 정을 준용 다

제 21 조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시되어야 권 의 전자등록)
사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 는 대신 전자등록기 의
전자등록 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시되어야 권 전자등록 다.

제 22 조(사채발 에 준용 정) 규
제 17 조의 정은 사채발 규 위 우에 준용 다.

제 4 장 주 주 총 회

제 23 조(소집시기)
사의 주주총 는 정기주주총 와 임시주주총 로 다.
정기주주총 는 매사업년도 종료 3 월 내에, 임시주주총 는 요에 따라
소집 다.

제 24 조(소집권자)

주주총 의 소집은 법령에 다 정 있는 유 예외 는 사 의 의예
대 사 따~~라~~집 대
대 사 유 시~~에~~는

사, 모 사 및 자 사 는 자 사 때 사의 발 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 는 주식을 지 있는 우 그 다 사 지 있는 사의 주식환 의 권 없다. 이

제 31 조(의 권의 불 일 사)

2 상의 의 권을 지 있는 주주 의 권의 불 일 사 자 때에는 일의 3일전에 사에 대 여 서면으로 그 뜻 유 지 여야 다.

사는 주주의 의 권의 불 일 사 부 수 있다. 그러나 주주 주식의 신 을 인수 였 나 기 인을 위 여 주식을 지 있는 우에는 그러 지 니 다. 아

제 32 조(의 권의 대 사)

주주는 대 인으로 여금 그 의 권을 사 수 있다.

제 1 의 대 인은 주주총 시전에 그 대 권을 증명 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 여야 다.

제 33 조(주주총 의 의방법)

주주총 의 의는 법령에 다 정 있는 우 예외 는 출석 주주의 반수로 되 발 주식총수의 4분의 1 상의 수로 여야 다.

제 34 조(주주총 의 의사록)

주주총 의 의사는 그 의 요령 의사록에 기재 의장 출석 사 기명날엔 는 서명을 여 본점 지점에 비 다.

제 35 조(소수주주의 권)

주주는 상법 및 련법령에 소수주주로서 의 권 을 지며, 사의 영진은 그 권 을 존중 여야 다.

제 5 장 이사·이사회

제 36 조(사의 수) 이

사의 총 수는 3명 이상 11명 내로 , 사외 사는 3인 이하로 이
사총수의 반이 되도록 다.

사외 사의 선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 여 사외 사의 수 제이 에서 정
사의 구성요에 미달 되면 그 사유 발생 처음으로 소집되는
주주총 에서 그 요 에 되도록 사외 사 선임 여야 다.

사의 사외는 사 직원을 겸 성()의 사로 구성 재 니 다. 아

제 37 조(사의 선임) 이

사는 주주총 에서 선임 다.

사의 선임은 출석 주주의 의 권의 반수로 되 발 주주총수의 4분의
1 상의 수로 여야 다.

2인 상의 사 선임 는 우 상법 제 382 조의 2에서 정 는 규
집중 제는 적용 지 니 다. 아

제 38 조(사외 사 보의 추천)

인사위원 는 상법 등 련 법 에서 정 자규를 준 자 중에서 사외 사 이
보 추천 다.

사외 사 보의 추천 및 자 심사에 세부적인 사 은 인사위원 에서
정 다.

제 39 조(사의 임기) 이

사의 임기는 9년 내에서 주주총 의 의로 정 다. 그러나 그 임기 임기 중
최종의 산기에 정기주주총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총 의 종 시까지 그
임기 연장 다.

제 40 조(사의 보선) 이

사 중 원 생긴 때에는 주주총 에서 선임 다. 그러나, 정 이
제 36 조에서 정 는 원수 지 니 업무상 상 지장 없는 우에
그러 지 니 다. 아

제 41 조(대 사의 선임) 이
대 사는 사 의 의뢰선임 다.

제 42 조(사의 직무) 이
대 사는 사 대 업무 총 다.
대 사 는 임원은 대아 사 보좌 이 사 에서는 정 이 는 바에 따라 오
사의 업무 분장집 며 대 사의 유 시에는 사 에서 정 이순서에 따라
그 직무 대 다.

제 43 조(사의 보 의무)
사는 사에 이저 손 미 염려 있는 사실을 발 때에는 즉시
사위원 에 보 여야 다.

제 44 조(사의 충실의무)
사는 사 및 전체주주의 익을 위 직위 수 여야 며, 사 속 이
독점 제 및 정 궤에 법률상 대 모기업집단 뉴 정 지배주주의 익을
위 사 는 전체주주에 손 되는 위 여서는 된다. 안

제 45 조(사 의 구성 이소집)
사 는 사 의 구성 때 이 사 업무의 중요사 을 의 다.
사 는 대 아 는 사이에 또 로 정 사 다 있을 때에는 그 사 이
일 1 일전에 사에 지 여 소집 다. 그러나, 사 전원의 동의 있을
때에는 소집절차 생략 수 있다.
사 의 의장은 제 2 의 정에 의 규 의 소집권자로 다.
사 는 정기 아 와 임시 아 로 , 정기 사 는 매 분 이 1 상, 이
임시 사 는 요에 수시로 소집 다.

제 46 조(사 의 의방법)
사 의 의는 사 반수의 출석 출석 사의 반수로 다. 다만 상법
제 397 조의 2(자기 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자기 래금지)에 당 는 사 에 대 안
사 의 의는 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다

사는 사외전부 임원 일부 직책을 의에 출석 지니 모든 의사 이
의성을 동시에 송수신는 신수단에 의여 의에 참는을 용수
있다. 우당사는 사에직접 출석으로 본다.
사의 의에의여 별 있는자는 의 권을 사 지 못 다.

제 47 조(사 의 의사록)

사의 의사에의여는 의사록을 작성 여야 다.
의사록에는 의사의 , 요령, 안고 , 반대 는자와 그 반대 유 이
기재 출석 사 기명날엔 는 서명 여야되 다.

제 48 조(위원회)

사는 사이 내에 다음 의 위원 둔다.
1. 인사위원
2. 사위원
3. 재무위원
4. ESG 위원
위원 의 구성, 권 , 운영 등에 세부사 은 사 의 의뢰정 다.
위원 에 대 서는 제 45 조, 제 46 조 및 제 47 조의 정을 준용 다규

제 49 조(사의 보수와 이직금)

사의 보수는 주주총 의 의로 정 다. 이
사의 직금의지급은 주주총 의 임원 직금 지급 정에 의 다. 규

제 50 조(상담역 및 문)

사는 사이의 의뢰상담역 는 문약 땡을 둘 수 있다.

제 6 장 감 사 위 원 회

제 51 조(사위원 의 구성)

사는 사에 음 여 제 48 조의 정에 의 사위원 둔다.

사위원 는 3인 상의 사로 구성 때이위원 중 1인 상은 현 또
재무전문 어야 다. 이

위원의 3분의 2 상은 사외 사어야 이사외 사 닌 위원은 상합
제 542조의10 제2 의요 을 추어야 다.

사외 사 닌 사위원 아위원을 선임 나 임 때에는 의 권을 사
최대주주와 그 수 인, 최대주주 는 그 수 또인의 산으로 주식을
보유 는자, 최대주주 는 그 수 또인에 의 권을 위임 자 소유 는
의 권 있는 주식의 의 권 있는 발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 는
우 그 초 는 주식에 여 의 권을 사 지 못 다.

사외 사인 사위원이 위원의 선임에는 의 권 있는 발 주식총수의 100분의
3을 초 는 수의 주식을 진 주주는 그 초 는 주식에 대 여는 의 권을
사 지 못 다.

사위원 는 그 의로 위원 대 자 선정 여야 다. 우 이
위원장은 사외 사 어야 때 이

사외 사의 사임사등 사유로 인 여 사외 사의 수 에서 정 이
사위원 의 구성요 에 미달 되면 그 사유 발생 처음으로 소집되는
주주총 에서 그요 에 되도록 여야 다.

제 52 조(사위원 의 직무)

사위원 는 사의 와 업무 사 다.

사위원 는 요 면 의의 목적사 소집의 유 서면에 찍어
사(소집권자 이있는 우에는 소집권자 말 다. 다.)에 제출 여 사 이
소집을 청구 수 있다.

제 2 의 청구 였는데도 사 지체 없이 사 소집 아니 면 그 아
청구 사위원 사 소집 이수 있다.

사위원 는 의의 목적사 소집의 유 기재 서면을 사 에 제출 여
임시총 의 소집을 청구 수 있다.

사위원 는 그 직무 수 기 위 여 요 때에는 자 사에 대 여 영업의
보 요구 수 있다. 우자 사이 지체 없 보 지이니 때 는야 또
보 의 내용을 인 요 있는 때에는 자 사의 업무와 재산상 조사 수
있다.

사위원 는 사의 외부 사인을 선정 다.

사위원 는 제 1 내지 제 6 외에 사 위임 이사 을 처 다.

사위원 의에 대 여 사 는 재 의 수 없다.
사위원 는 사의 비용으로 전문 의 도움을 구 수 있다.

제 53 조(사록)

사위원 는 사에 여 사록을 작성 여야 며, 사록에는 사의
실시요령 그 기재 사 실시 사위원 위원 기명날인 씬 또
서명 여야 다.

제 7 장 계 산

제 54 조(사업년도)

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 12월 31일까지로 다.

제 55 조(재무제 와 영업보 서의 작성비 등)

사의 대 이사는 정기주주총 일의 6주 전에 다음 의 서류와 그
부속명세서 및 영업보 서 작성 여 사위원 의 사 받 야 며 다음아
의 서류와 영업보 서 정기총 에 제출 여야 다.

1. 대차대조
2. 손익 산서
3. 그 밖에 사의 재무상 와 영성 시 는 으로서 상법 시 령에서
정 는 서류

사 상법시 령에서 정 는 연 재무제 작성대상 사에 당 는
우에는 제1 의 서류에 연 재무제 다.

사위원 는 정기주주총 일의 1주전까지 사보 서 대 사에 이
제출 여야 다.

대 사는 제1 이 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 서 및 사보 서와
계 정기주주총 일의 1주 전부 본사에 5년 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
비 여야 다.

대 사는 제1 이 의 서류에 대 주주총 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
대차대조 와 외부 사인의 사의 을 여야 다.

제 56 조(외부 사인의 선임)

사는 사위원 선정 외부 사인을 선임 며 선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 에 그 사실을 보 나 주식 사 등의 외부 사에 법률 시 령에서 정 는 바에 주주에 따좌 는 여야도 다.

제 57 조(익금의 처분)이

사는 매 사업년도말의 처분전 익잉여금을 다음 처분 다. 이

1. 익준비금 이
2. 기 의 법정적 금
3. 배당금
4. 임의적 금
5. 기 의 익잉여금처분이

제 58 조(익배당) 이

익의 배당은 현금 주식 및 기 의 재산으로 수 있다.

제 1 의 배당은 매 산기말 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는 등록된 또 질권자에 지급 다.

사 물배당을 는 우 주주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 수 있으며, 일정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 주주에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지급 수 있다.

제 59 조(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)

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 사 지 이니 면 소멸사 완성된다.

제 1 의 시 의 완성으로 인 배당금은 사에 속이다. 귀

부 칙

- (시 일) 정 은 ~~아~~의 설 ~~행~~기일부 시 다.
- (설 ~~최초의 사업년도~~) 정 제 54 조에도 불구하고 사 설 이 이
최초의 사업년도는 사설 일로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다.
- (설 ~~최초의 명의 세대 인~~) 정 제 17 조에도 불구하고 사 설 이
최초의 명의 세대 인은 예 제원으로 다.
- (설 ~~최초의 사 대 사~~의 선임) 정 제 37 조, 제 38 조, 제 41 조 및
제 51 조에도 불구하고 사 설 이 최초의 사 대 사, ~~사~~외 사 ~~및~~ 이
사위원 위원은 분 사의 분 서에 여 분 서에 대 주주총
승인을 여 선임 다.
- (설 ~~최초 사업연도의 사의 보수~~) 정 제 49 조에도 불구하고 사 이
설 ~~최초 사업연도의 사의 보수는~~ 분 사의 분 서에 여
분 서에 대 주주총 승인을 여 정 다.
- (설 ~~최초의 임원 직금 지급 정의 제정~~) 정 규 제 49 조에도 불구하고 이
사 설 ~~최초의 임원 직금 지급~~ 정은 분 사 ~~위~~ 분 서에 여
분 서에 대 주주총 승인을 여 정 다.

부 칙

- (시 일) 정 은 주주총 에서 승인 2022년 3월 24일부 시 다.